

2023년도 상반기 보훈·장애인 채용 공고

1. 채용조건

구분	주요내용
채용신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 정규직(일반직) ◇ 6급 : 정규직(기사직) ◇ 7급 : 무기계약직 <p>※ 신입사원 교육 및 수습 근무 후 정규 임용. 수습 기간 중 내부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 정규 임용을 유예 또는 배제할 수 있음</p>
급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내규에 따름 - 5급 - 34,932천원, 6급 - 28,032천원, 7급 - 25,092천원 ※ 경력 없음, 수습 기간 및 성과급(차년도 지급) 제외 기준 ※ 경력은 우리 공사 연봉제규정, 연봉제규정시행세칙, 채용관리세칙에 따라 인정되며, 공사 규정은 홈페이지 - 공사소개 - 사규에 상시 공개되어 있음
수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 이내(사정에 따라 기간 단축 가능) ※ (5급, 6급) 수습기간 중 보수는 기준급의 80% 수준 ※ 22년 신입사원 수습 기간은 5급, 6급은 6개월, 7급은 3개월 운영
정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0세
근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6급) 연고지 및 부서별 인력수급현황을 고려하여 배치 ◇ (7급) 유지관리 인력은 입사 지원한 지사 근무, 농지은행상담원은 본사(농지은행처) 근무 예정 ※ 유지관리 인력은 해당지역 최소 5년간 의무 근무

※ 6급(기사직), 7급(무기계약직)은 정규임용 후 4년 경과시 직급전환 시험을 통해 5급, 6급으로 전환 가능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명)	계	5급(일반직)							6급(기사직)					7급(무기계약직)		
		소계	행정	토목	지질	기계	건축	전산	소계	토목	기계	전기	건축	소계	유지	상담
계	53	16	1	8	2	2	2	1	10	6	2	1	1	27	26	1
보훈	41	9	1	4	1	2	1	-	6	4	1	-	1	26	26	-
장애	12	7	-	4	1	-	1	1	4	2	1	1	-	1	-	1

○ (7급) 채용 분야(지사) 및 선발인원

구 분	채용분야	인원	비고
소 계	근무지(지사 등)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27	
본 사	농지은행처(1)	1	장애인제한경쟁
경기지역본부	화성.수원지사(1), 안성지사(1)	2	보훈제한경쟁
강원지역본부	홍천.춘천지사(1), 원주지사(1), 영북지사(1)	3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1), 옥천.영동지사(1)	2	
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1), 논산지사(1), 부여지사(1), 홍성지사(1), 당진지사(1)	5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1), 동진지사(1), 군산지사(1)	3	
전남지역본부	화순지사(1), 목포.무안.신안지사(1)	2	
경북지역본부	경주지사(1), 영주.봉화지사(1), 상주지사(1), 경산.청도지사(1)	4	
경남지역본부	울산지사(1), 진주.산청지사(1), 밀양지사(1), 창원지사(1), 사천지사(1)	5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공통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으며, 임용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기타	◇ 당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1 참조>

□ 직급·직계별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5급	◇ 기술분야(토목, 지질, 기계, 건축, 전산) 응시자는 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에 한함 <인정자격증: 붙임2 참조>
6급	◇ 기술분야(토목, 기계, 전기, 건축) 응시자는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에 한함 <인정자격증: 붙임2 참조>
7급	◇ 기술원 응시자는 운전면허 자격증(2종 보통이상) 소지자

※ 응시자격을 갖춘 적격자는 서류전형 전원 합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 고급자격증 보유자 및 장애인,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기술 분야 응시할 경우 5급은 “기사” 이상, 6급은 “산업기사” 이상, 7급은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 이상)” 자격 필요

□ 전형별 자격사항

구 분	지 원 자 격
장애인 전 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위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장애인 전형” 이 아닌 타 전형 지원 시 장애인우대 가점부여 ※ “장애인 전형” 에 응시하는 자는 타 전형에 중복응시 불가
보 훈 전 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전형-고용명령(5급, 6급 해당)’ 은 국가보훈처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공사에 추천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가능 ※ 신청 및 심사문의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062-975-6652) ◇ ‘보훈전형-제한경쟁(7급 해당)’ 은 관련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p>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모두 지원 가능</p> <p>※ 보훈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타 전형에 중복응시 불가</p> <p>※ 보훈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필기, 면접전형 과락 배제</p> <p>◇ 국가보훈처 추천 보훈대상자 이외에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취업 지원대상자는 “보훈전형(고용명령)” 외 다른 전형으로 응시 가능하며 관련법에 따른 가점 부여</p>
--	--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 우대사항

전 형	세 부 내 용
취업지원 대 상 자	<p>◇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p> <p>◇ 관련법에 따른 가점을 부여(단계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p>
장 애 인	<p>◇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p> <p>◇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p>
저소득층	<p>◇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p> <p>◇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p>
북 한 이탈주민	<p>◇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p> <p>◇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p>
다 문 화 가 족	<p>◇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p> <p>◇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p>
고급자격증 보 유 자	<p>◇ 대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기술사, 건축사</p> <p>◇ 서류심사 면제 [자격증(기술분야에 한함) 등 기본 지원 자격 구비 완료 시]</p> <p>◇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p>

※ 모든 우대혜택은 기본지원 자격 구비 완료 시 적용

※ 우대사항 중복 시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

※ 서류전형, 필기전형 각 과목별 또는 면접전형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외에 우대사항은 채용분야별, 전형별 채용인원과 상관없이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는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보훈제한경쟁 제외)

※ 상기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해야 함

4. 채용절차

- ◇ (허들식 채용)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 ◇ (점수 계산) 항목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셋째자리 이하 버림)
- ◇ 동점자는 공사 채용관리세칙에 따라 처리



□ 서류전형

- “3. 응시자격”을 갖춘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기회 부여
 - 단, 지원서 작성불량 지원자는 응시자격 적격여부와 관계 없이 불합격 처리
-
- ◇ 내용과 무관한 특수기호 반복 사용, 의미없는 단어 나열
 - ◇ 자기소개서 중 1개 항목 이상 미기재 또는 동일내용 반복
 - ◇ 최소분량 미달, 무의미한 내용 작성, 타기관명 기재 등

□ 필기전형

- (시험과목) NCS 직업기초능력평가(객관식 50문항)

채용분야	출제범위
행정, 전산, 사무원(농지은행상담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혼합출제)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기술원(유지관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혼합출제)

- 객관식(5지 선다)으로 출제되며, 시험문제 출제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 난이도 : 5급은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 또는 기사자격시험 수준 이상, 6급은 해당분야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 또는 산업기사자격시험 수준 이상, 7급은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

○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각 5배수 인원을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 각 과목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합격자에서 제외(보훈전형 제외)

□ 면접전형

○ 심사방법 : 직무수행능력 면접과 직업기초능력 면접 등 평가진행

- 블라인드 면접으로 시행하며, 면접방식 및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내용

구 분	평 가 내 용
직무수행능력 면접	실무지식, 직무역량 등
직업기초능력 면접	직업윤리,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각 단계별 40%이상 득점하고 합산점수 60%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보훈전형에서는 대상자 과락 배제
- 최종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
 - ※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필기전형 고득점자(직무수행능력평가 미시행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 득점 기준)

5. 예비합격자 제도 및 부정행위자 조치 운영

□ 예비합격자 제도

- 공사 「채용관리세칙」 제18조(합격자 결정)에 따라 전형별 합격자 중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예비합격자(전형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대상 예비순번을 부여) 제도를 운영합니다.

※ 적격자 : 단계별 과락, 인성검사 부적격,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사 「채용관리세칙」 제19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 비위행위자 및 부정합격자 등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2. 23.(목) ~ '23. 2. 28.(화) 14:00(※ 마감시각 준수)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rc.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 등으로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시를 준수하여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일 14:00까지 제출완료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지원서 제출 완료 및 수험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종료 후 수정 불가)
- ◇ 최종 제출 완료 전 자격, 경력 등 기재사항(일자, 등록번호 등)을 제출 예정인 증빙서류와 대조함으로써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사지원서 관련 시스템 오류 및 문의사항은 채용 콜센터(070-4012-60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채용일정

전형일정	일시	비고
공고일	2. 14(화)	· 공고기간 : ~ 2. 28(화)
지원서 접수	2. 23(목) ~ 2. 28(화) 14:00	·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서류전형	3. 2(목) ~ 3. 6(월)	· 기간내 서류전형 검증위원회 실시 - 3. 6(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3. 7(화)	·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필기전형	3. 11(토)	· 서울(예정) · 직업기초능력평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3. 15(수)	· 면접 집합시간 안내
증빙서류 제출	3. 15(화) ~ 3. 19(일) 24:00	· 우대사항 등 확인 - 수집된 서류는 기재사실 검증을 위해 활용하며 평가위원에게는 미제공
면접전형	3. 21(화) ~ 3. 23(목)	· 나주(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3. 27(월)	·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수습 임용	3. 31(금)	
예비합격자 운영	~ 23. 4. 28(금) 18:00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 통해 공지예정

8. 증빙서류 제출

- ◇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 기재사항 검증을 위해 활용되며, 평가 외 사항(성명, 연락처 등)은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검증 대상 외의 자료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별도 제출하지 말 것)
- ◇ 증빙서류는 스캔(사본)하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컴퓨터 파일(PDF 등)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등록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또한 제출하신 증빙서류의 원본(자격증의 경우 사본)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기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 경력, 우대사항 등 서류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은 증빙서류 제출 기간에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등록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원본 제출(입력내용과 증빙이 불일치할 경우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사전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제출서류(※발급유효기간 유의요망)

- 자격증, 장애인·보훈전형 등 모든 응시자격 및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은 서류 접수 마감일(23. 2. 28)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 인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아래 발급유효기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제출서류	발급유효기간
필 수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5·6급 기술분야) 채용 관련 공사 인정 자격증 사본(기술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한국산업인력공단)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한 내
	◇ (7급) 자동차 운전면허증(제2종보통면허 이상) 사본 경찰청	

구 분	제출서류	발급유효기간
해당자만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청)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시·군·구청),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 가족 관계증명서 및 부(父) 또는 모(母)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다문화가족자녀 :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채용 관련 공사 인정 자격증 사본(전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한국산업인력공단)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한 내
	◇ 기재한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며 부서명, 담당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9.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서류) '23. 3. 7 ~ 3. 10.
- (필기) '23. 3. 15 ~ 3. 18.
- (면접) '23. 3. 27 ~ 4. 11.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rc.recruiter.co.kr>)를 통해 접수

□ 처리방법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내용 검토결과 회신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1)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사항 (합격자 발표 등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 또는 채용 홈페이지 Q&A 활용)
-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0. 유의사항

- 채용홈페이지 원서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 요구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의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등 공사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합격이 무효가 됨은 물론, 서류 위·변조 시에는 추후 우리 공사 사원 선발 시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기간유효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화에 필요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사는 채용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채용관리세칙 제19조의2)에 따라 조치합니다.
- 면접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면접탈락자에 한해 가능하며, <양식 1>의 양식을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를 방문하여 원본 제출하거나, 스캔하여 송부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필기 및 면접전형 시 유의사항

- 전형 당일 기준 확진판정 후 미 완치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응시 불가
- 지원자가 전형 당일 문진표 작성, 발열 검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조치에 비협조 시 응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전형 당일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정도에 따라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 하거나 귀가조치(선별 진료소 방문 연계) 될 수 있음

* 37.5°C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 전염병 확산 및 정부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한 채용일정 변경 가능

○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입사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할 수 있습니다.(추가합격자는 임용 동의서 제출 필수)

○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 내부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 정규 임용을 유예 또는 배제할 수 있음

○ 우리 회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정책에 의거, 분기별로 회사 홈페이지에 입사자와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에 따라 지원서 작성 및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는 콜센터 또는 채용 홈페이지 Q&A 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

- 콜센터 : 070-4012-6067

- 채용 홈페이지 : <https://krc.recruiter.co.kr>

【붙임 1】 공사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

【붙임 2】 채용 관련 자격증

【붙임 3】 직무기술서(별첨)

【양식 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 1】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7.1.)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붙임 2】

채용 관련 자격증

□ 직급별 인정 자격증(지원자격)

○ 5급

직 계	응시분야	1등급	2등급
행정	경상/법정/농학	-	-
전 산	전산일반	정보관리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포함)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토 목	토목일반	토질및기초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토목구조기술사	-
		항만및해안기술사	-
		도로및공항기술사	-
		수자원개발기술사	-
		상하수도기술사	-
		농어업토목기술사	-
		토목시공기술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콘크리트기사
		-	토목기사
-	해양공학기사		
기 전	기 계	기계기술사(舊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직 계	응시분야	1등급	2등급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배관기능장	-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舊 건설기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용접기술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사	
		-	일반기계기사	
		-	농업기계기사	
		-	산업안전기사	
		-	설비보전기사	
		-	기계설계기사	
		-	건축설비기사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건 축	건축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구조기술사		-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		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		실내건축기사	
	-	시각디자인기사		
	지 질	지 질	지질및지반기술사	-
			자원관리기술사	-
			토양환경기술사	토양환경기사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			광산보안기사	
-			응용지질기사	

○ 6급

직 계	응시분야	1등급	2등급	3등급
토 목	토목일반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토질및기초기술사	-	-
		토목구조기술사	-	-
		항만및해안기술사	-	-
		도로및공항기술사	-	-
		수자원개발기술사	-	-
		상하수도기술사	-	-
		농어업토목기술사	-	-
		토목시공기술사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	해양공학기사	-
-	-	해양조사산업기사		
기 전	기 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
		기계기술사(舊기계공정설계 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배관기능장	-	배관산업기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舊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용접기술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	설비보전기사	-
		-	일반기계기사	-
		-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기계설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전 기	전 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발송배전기술사			-	-
전기응용기술사			-	-

직 계	응시분야	1등급	2등급	3등급
		전기안전기술사	-	-
		소방기술사	-	-
		산업계측제어기술사	-	-
		통신설비기능장	-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기철도기술사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철도신호기술사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		
	건축	건축사	-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시공기술사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건축구조기술사	-	-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양식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